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(서울글로벌센터빌딩)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35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공유재산(서울글로벌센터빌딩) 현황

- 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(서린동, 영풍문고 옆)
- 면적: 대지면적 $1,070m^2$, 연면적 $11,752m^2$
- 목적: 국제기구 활동 지원
- 규모: 지하 4층, 지상 15층
- 재산관리관: 외국인이민담당관(건물), 주차계획과(토지)

나. (서울국제개발협력단) 공유재산 사용 현황

- 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(서울글로벌센터빌딩 13층 1호)
- 면적: 토지 $24.36m^2$, 건물 $267.37m^2$
- 목적: 국제개발협력단(SH 산하조직) 비영리 사업 수행(사무공간)
- 당사자: 〈허가부서〉 외국인이민담당관 / 〈수허가자〉 서울국제개발협력단
- 허가기간: 2025. 1월 ~ 2026. 12월(2년)

- 무상사용기간: 2026. 5월 ~ 2026. 12월(8개월)
- 예상 감면액: 총 62,037천원

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지방공사에 해당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,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정책공유 등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함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.

➡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,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

※ '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: '조건부 적정'

- 심 의 일: '26. 3. 12. (목)
- 심의결과: 조건부 적정(재산관리과-3468, '26. 3. 20.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김희라 (☎ 2133-5066)